

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3275
--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7. .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주민자치협의회의 운영 활성화와 회원 참여 독려를 위하여 정기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주민자치협의회의 정기회의 참석수당 조항 신설(안 제23조의2)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5. 예산수반 사항: 덧붙임

6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기간: 2026. 5. 8.~2026. 5. 28.(20일간)

나. 의견내용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개선사항 없음(덧붙임)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 동의(덧붙임)

9. 참고사항: 해당 없음

10. 관련부서: 경기도 자치행정과

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”를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위원”(이하 “위원”을 “위원”(이하 “위원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명칭은 「· · 동 주민자치회」”를 “명칭은 「· · 동 주민자치회」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‘특별법’”를 ““특별법”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업무 :”를 “업무: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수탁업무 :”를 “수탁업무: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협의업무 :”를 “협의업무: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중 “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”를 “「공직선거법」 제

19조” 로 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경우 :” 를 각각 “경우:” 로 한다.

제12조 단서 중 “실비” 를 “실비(實費)” 로 한다.

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이상” 을 “2 이상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1이상” 을 “1 이상” 으로, “발의 할” 을 “발의할” 로 한다.

제15조제4항 본문 중 “하며, 호선(互選)에 의하여” 를 “하며,” 로 한다.

제19조제1항제1호 중 “정기회의 :” 를 “정기회의: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임시회의 :” 를 “임시회의:” 로 한다.

제20조제8항 중 “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” 를 “한정하여 예산의 범위” 로 한다.

제22조의2제2항제2호 중 “이익에 반하는” 을 “이익에 어긋나는” 으로 한다.

제23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협의회 정기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자치행정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자치행정과장 정 주 연
	팀장 직위 · 성명	자치행정팀장 이 재 민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황 인 영 (031-790-5113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 략) 2. “주민자치회 위원”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. 3.·4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위원”(이하 “위원” ----- ----- -----.			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하는 동에 한하여 적용한다.	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----- 한정하여 -----.			
제5조(설치 및 구성) ① (생 략)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「· · 동 주민자치회」라 한다.	제5조(설치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명칭은 「· · 동 주민자치회」-----.			

③ (생 략)

제6조(기능) ① 주민자치회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특별법’이라 한다)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주민자치 업무 : 주민총회 개최, 자치계획 수립, 마을 축제, 마을신문·소식지 발간, 공동체 형성,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,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
2. 수탁업무 : 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
3. 협의업무 :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

② (생 략)

제7조(위원의 자격) ① (생 략)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할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기능) ① -----

----- “특별법” -----

-----.

1. ----- 업무: -----

2. 수탁업무: -----

3. 협의업무: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위원의 자격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-----

수 없다.

1. 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

2. ~ 5. (생략)

제10조(위원의 위촉) ① (생략)

② 위원에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. 다만,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.

1.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: 명부순위 순

2.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: 제8조에 따라 위촉

③ (생략)

제12조(위원의 대우) 위원에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위원의 해촉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

-----.

1. 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위원의 위촉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. -----

-----.

1. ----- 경우: --

2. ----- 경우: 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위원의 대우) -----

-----.

----- 실비

(實費) -----.

제14조(위원의 해촉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~ 3. (생 략)

③ 주민자치회는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(連書)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,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15조(주민자치회의 장) ① ~ ③ (생 략)

④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호선(互選)에 의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9조(회의)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.

1. 정기회의 : 월 1회 원칙
2. 임시회의 :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

2 이상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1 이상-----
----- 발의할

-----.

제15조(주민자치회의 장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하, -----
-----.

제19조(회의) ① -----
-----.

1. 정기회의: -----
2. 임시회의: -----

② ~ ⑤ (생 략) 제20조(주민총회) ① ~ ⑦ (생 략) ⑧ 주민자치회는 제4항의 사전 투표 참여자 및 주민총회 참석자에 <u>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이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.</u> ⑨ (생 략) 제22조의2(동의 행정적 지원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주민자치회의 자치활동을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 1. (생 략) 2. 공공의 <u>이익에 반하는</u> 경우 제23조의2(주민자치협의회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20조(주민총회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----- ----- ----- <u>한정하여 예산의 범위</u>----- ----- -----. ⑨ (현행과 같음) 제22조의2(동의 행정적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이익에 어긋나는</u> -- 제23조의2(주민자치협의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시장은 협의회 정기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
---	---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○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의2제4항

나. 비용 발생 요인

○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 수당 지급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.

○ 현재 13개동 주민자치회 회장을 지급대상으로 하고, 매월 회의 개최를 통해 정기회의 참석수당 5만원을 지급함.

나. 추계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
총 소요액	2.6	7.8	7.8	7.8	7.8
협의회 정기회의 수당 지급	2.6	7.8	7.8	7.8	7.8

다. 재원조달방안: 2026년 추경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: 해당 없음

4. 작성자: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(정주연)

＜ 연도별 비용 추계표 ＞

(단위: 천원)

구 분		1차연도 (2026년)	2차연도 (2027년)	3차연도 (2028년)	4차연도 (2029년)	5차연도 (2030년)	계
세 입		0	0	0	0	0	0
해당없음		0	0	0	0	0	0
세 출		2,600	7,800	7,800	7,800	7,800	33,800
회의 참석수당		2,600	7,800	7,800	7,800	7,800	33,800
재원 조달		2,600	7,800	7,800	7,800	7,800	33,800
의존 재원	소 계	0	0	0	0	0	0
	보조금	0	0	0	0	0	0
	지방교부세	0	0	0	0	0	0
자체 수입	소 계	2,600	7,800	7,800	7,800	7,800	33,800
	지방세	2,600	7,800	7,800	7,800	7,800	33,800
	세외수입	0	0	0	0	0	0
지방채		0	0	0	0	0	0
기 금		0	0	0	0	0	0
공기업 특별회계		0	0	0	0	0	0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0	0	0	0	0	0

관계법령 발췌서

1
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

[시행 2026. 1. 2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- 제40조(주민자치회의 설치 등)**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(이하 “자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 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
-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-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